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⁴ C07D 401/08	(11) 공개번호 특 1985-0001194
(21) 출원번호 특 1984-0004245	(43) 공개일자 1985년 03월 16일
(22) 출원일자 1984년 07월 19일	
(30) 우선권주장 8319874 1983년 07월 23일 영국(GB)	
(71) 출원인 스미스 클라인 앤드 프렌취 라보라토리스 리미티드	데이비드 마틴 워터스
(72) 발명자 영국 허트포드셔어 웰턴 가든시 만델스 조오지 시드니 새크	
(74) 대리인 영국 허트포드셔어 웰턴 테윈 우드 카우퍼스웨이 15 황주명	

심사청구 : 없음

(54) 화합물

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화합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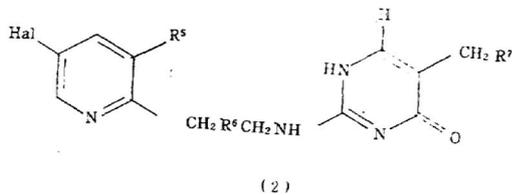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반식(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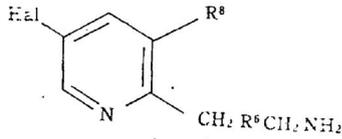
의 화합물과 이들의 약제학상 허용 가능한 염의 제조방법.

여기서 할(Hal)은 할로겐원자이고; R⁵은 아미노그룹이거나 생체내에서 아미노로 전환할 수 있는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이들의 유도체이고; R⁶은 C₁₋₅알킬렌그룹이고; R⁷은 3-피리딜; N-옥소-3-피리딜; 6-메틸-3-피리딜; N-옥소-6-메틸-3-피리딜; 6-하이드록시메틸-3-피리딜; 4,6-디메틸-3-피리딜; N-옥소-4,6-디메틸-3-피리딜; 6-하이드록시메틸-4-메틸-3-피리딜; 5,6-디메틸-3-피리딜; N-옥소-5,6-디메틸-3-피리딜; 6-하이드록시-메틸-5-메틸-3-피리딜; 4-피리딜 혹은 N-옥소-4-피리딜이다.

본 발명은 다음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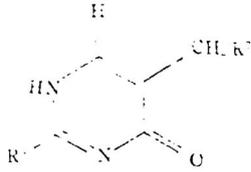
화합물들은 Hal과 R⁶은 일반식(2)에 관하여 정의한 바와같고 R⁸은 아미노이거나 보호된 아미노그룹인 일

반식(3)의 화합물;



(3)

이나 이들의 염을, 일반식(4)의 화합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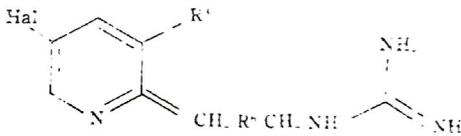


(4)

과 반응시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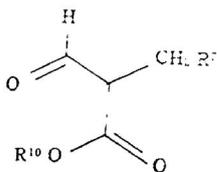
여기에서 R⁷은 일반식(2)에 관하여 정의한 바와같고 R⁹은 아민으로 치환될 수 있는 그룹이며, 그후에는 R⁷은 그와같이 얻어진 일반식(2)의 화합물을, R⁶이 6-하이드록시메틸-3-피리달; 6-하이드록시메틸-4-메틸-3-피리달; 혹은 6-하이드록시메틸-5-메틸-3-피리달인 일반식(2)의 대응하는 화합물로 전환하며 필요에 따라 R⁸ 그룹을 R⁵ 그룹으로 전환하고 임의로 그렇게 얻어진 대응하는 일반식(2)의 화합물을 약제학상 허용 가능한 염으로 전환하는 N-옥소-6-메틸-3-피리달; N-옥소-4,6-디메틸-3-피리달; 혹은 N-옥소-5,6-디메틸-3-피리달이다.

일반식(2)의 화합물은 또한 Hal, R⁶ 및 R⁸가 일반식(3)에 관하여 정의된 바와같은 일반식(9)의 구아니딘;



(9)

을 R⁷이 일반식(4)에 관하여 정의된 바와같고, R¹⁰이 C₁₋₄ 알킬(특히 에틸)벤질혹은 페닐인 일반식(10)의 화합물;



(10)

과 반응시켜서 제조시키는 것.

여기에서 R⁷은 일반식(4)에 관하여 정의된 바와같고, R¹⁰은 C₁₋₄알킬, 벤질혹은 페닐이고 그 후에는 R⁷이 그렇게 얻어진 일반식(2)의 화합물을 R⁷이 6-하이드록시메틸-3-피리달; 6-하이드록시메틸-4-메틸-3-피리달; 이나 6-하이드록시메틸-5-메틸-3-피리달은 일반식(2)의 상응하는 화합물로 전환하고 임의로 그와같이 수득한 일반식(2)의 화합물을 약제학상 허용 가능한 염으로 전환하는 N-옥소-6-메틸-3-피리달, N-옥소-4,6-디메틸-3-피리달이나 N-옥소-5,6-디메틸-3-피리달이다.

청구항 2

일반식(3)이나 (9)의 화합물에서 Hal이 브로민인 청구범위 제1항에서 청구한 바와같은 공정.

청구항 3

일반식(3)이나 (9)의 화합물에서 R⁵가 아미노인 청구범위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청구한 바와같은 공정.

청구항 4

일반식(3)이나 (9)의 화합물에서 R^6 가 에탄-1,2-디일인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3항중의 어느 하나에서 청구한 바와같은 공정.

청구항 5

일반식(4)이나 (10)의 화합물에서 R^7 이 6-메틸피리드-3-일이나 N-옥소피리드-4-일인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4항중의 어느 하나에서 청구한 바와같은 공정.

청구항 6

일반식(4)의 화합물에서 R^9 이 니트로 아미노인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중 어느 하나에서 청구한 바와같은 공정.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